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9. 9.(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1. 8. 27.
- 회부일 : 2021. 8. 31. (의안번호 : 21-91)

2. 제안이유

- 관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수탁 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기준, 협약체결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

4.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건설기술 관리법」 이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비 기준이 200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공사규모가 “소규모공사” 라고 정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조례명을 수정하고 감독위탁 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규정을 반영하였으며,
-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의 의무, 협약체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의 취소, 사무편람 등 행정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과 중복되어, 현행 조례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하여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